

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7. 29.(수) 배포</p>	
---	---	---

##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」 범정부 합동 추진을 위한 심의·의결
  -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체계 마련과 시설·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에 총력
  -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아동보호의 책무성 강화
- ◆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 재사용 및 친환경 원료 사용 유도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7월 29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□ 제1호 안건으로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」을 논의한다.

○ 이번 방안은 지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(6월 12일)에서 토의한 ‘아동학대 방지 대책’의 후속 종합대책으로서, 그간 정부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(TF)\*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·보완하고,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.

\* 교육부 차관보(단장), 교육부·기재부·복지부·여가부·법무부·행안부·경찰청·문체부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 (정보연계 작업반 별도 운영)

○ 이번 대책은 **현장을 중심**에 두고, 위기 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**정보를 공유·연계**하는 한편, 과감한 **인프라 개선, 재발 방지**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, **주기적 점검**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○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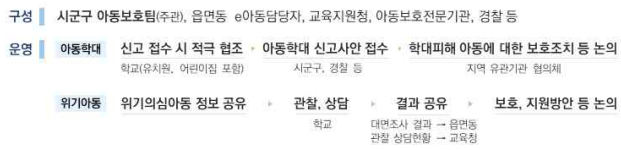
❶ 지역 단위의 **진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**를 통해 위기 아동·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조력한다.

- 1 -

○ 먼저,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한다.

-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정보,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**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**하여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.

###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위기아동 대응 방안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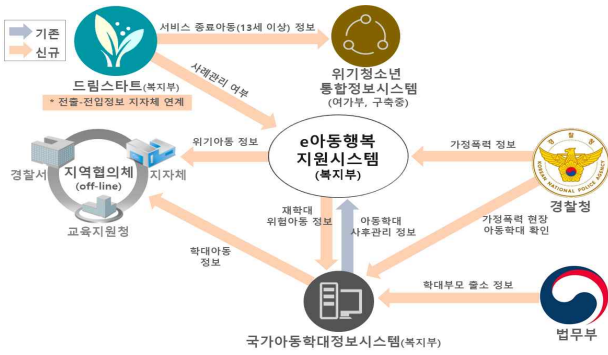


- 아울러,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 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(화상연결)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하여 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.

○ 또한,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**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·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·통합**한다.

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정보 공유·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예정

< 위기 아동·청소년 정보 연계(안) >



㉔ 인프라를 과감히 개선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한다.

-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**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.
- 또한,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**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**하고,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.

㉕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,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한다.

- 신체·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**민법 징계권** 조문을 개정한다.
- 또한,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**'즉각 분리제도'**를 도입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.
  - \*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,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 (아동복지법에 조항 신설)

㉖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·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, 사후 관리까지 **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**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.



- (예방) **아동수당·혼인·출생**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**정보를 제공**하고, 초·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·보급한다.
- (발굴) **신고 의무자 직군\***을 위한 **전문 교육 콘텐츠**를 개발·보급하고, 교원·보호시설 종사자에게 **의명 신고·신고자 보호제도**를 집중 안내한다.
  - \* ▲ 초·중·고 종사자 ▲ 어린이집·유치원 종사자 ▲ 의료인 ▲ 취약계층아동 통합 서비스지원(드림스타트) 종사자 ▲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(신고 실적 등 고려)
- (초기대응)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**경찰·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\***한다.
  - \* 현행 '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'에서, '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'로 확대 (아동학대처벌법 개정)
- (보호·지원)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했던 **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** 등을 지원하여,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.
  - \*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 대상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
- (재발방지)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**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**을 검토할 **특별 전담팀(ITF)**을 운영하고, 학대행위자가 의료·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**취업 제한 직종**을 확대해 나간다.
  - 또한, **주요 사망 사건**에 관한 **사례분석**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(아동권리보장원 내)을 구성·운영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\*을 신설하여 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
\*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, 교육 또는 의학적·심리적 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추진 (아동복지법 개정)

㉔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, **관계부처·민간 전문가**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(반기 1회 원칙)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-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.

○ 이와 함께,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제2호 안건으로 「**아이스팩 적정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방안**」을 논의한다.

○ 최근 신선식품을 온라인에서 구입·배송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, 아이스팩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.

※ 2019년 아이스팩 사용량은 2.1억 개(추정)로,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

- 그런데, 시중의 아이스팩 중 약 80%가 재료로 사용하는 ‘고흡수성 수지’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, 소각하거나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.

\* 물을 흡수하여 겔 형태로 만드는 물질로,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 기저귀 등에 사용되고 있음

○ 이에, 정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이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,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.

- 5 -

○ 우선,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되도록 **크기, 표시사항(배출방법) 등 규격을 표준화**하고, 지자체의 **아이스팩 수거함 설치·운영을 지원**하여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.

- 이를 위해,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 간담회, 시범사업 등을 거쳐 마련한 「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」을 7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주민센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여, 국민들이 가까운 수거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○ 또, 앞으로는 아이스팩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, **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**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.

※ 1개당 94원(중형 크기 300g 기준)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8월 초 입법예고 예정)

- 이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제조 단가에 반영한 것으로서, 물이나 전분 등 대체 재질을 사용했거나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했다라도 재사용되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면제된다.

- 다만, 부담금 도입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이므로, 제조업체의 준비와 재사용 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폐기물부담금 부과까지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에 최초로 부과할 예정이다.